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추경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910 발의연월일: 2021. 2. 3.

발 의 자 : 추경호 · 김정재 · 윤창현

이양수 · 정희용 · 김용판

이종성 · 이종배 · 박완수

구자근 · 김승수 의원

(11일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, 그 한도를 공제하는 금액과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87조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을 300만원으로 하고 있음.

그런데 문재인정부의 계속되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전세대란이 발생하고 서민들의 전세부담이 급증되고 있으며 특히,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COVID-19)로 인한 고용 불안정 및 실업으로 인해 생계부담이 가중되고 있음.

이에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공제 한도를 100만원 인상하고, 소득공제율 또한 100분의 50으로 상향조정하여 국민의 주거

안정에 기여하고자 함(안 제52조제4항).

법률 제 호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2조제4항 본문 중 "100분의 40"을 "100분의 50"으로 하고, 같은 항단서 중 "300만원"을 "400만원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특별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) 제5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
제52조(특별소득공제) ① ~ ③	제52조(특별소득공제) ① ~ ③	
(생 략)	(현행과 같음)	
④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	4	
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		
으로 정하는 세대(이하 제5항		
에서 "세대"라 한다)의 세대주		
(세대주가 이 항, 제5항 및		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87조제2		
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		
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		
말하며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		
외국인을 포함한다)로서 근로		
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		
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		
의 주택(주거에 사용하는 오피		
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		
린 토지를 포함하며, 그 딸린		
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		
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		
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		
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		
오피스텔은 제외한다)을 임차		
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		

하는 수택임자자금 자입금의
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
우에는 그 금액의 <u>100분의 40</u>
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
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
한다. 다만, 그 공제하는 금액
과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87조
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
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
그 초과하는 금액(이하 이 항
에서 "한도초과금액"이라 한다)
은 없는 것으로 한다.

⑤ ~ ⑪ (생 략)

	- <u>100분의</u>	50
<u>400만원</u>		
⑤ ~ ⑪ (현행과	같음)	